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 고지서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2019. 2. 15.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호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4항,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 등 사항을 고지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이재형 및 그 외 원고 18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구현주

피고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장황림, 황혜진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3. 판결의 주문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는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이 2011. 1. 28. 실시한 별지 기재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씨모텍과 잔액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인수인이고, 원고(대표당사자)와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이하 '이 사건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 발행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나. 씨모텍은 '시가발행에 의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으로 약 286억 원 규모인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액면가 500원, 발행가 1주당 2,390원)에 관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 원이 2010. 9. 14.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인수의견을 표명하였고,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 그러나 당시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 원은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성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호, 같은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구성원들에게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재 전·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

라. 이 사건 구성원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가액에서 청산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책임제한비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배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는 1,455,279,441원이다.

[발행가격 2,390원 × 2011. 3. 24. 당시 보유유증주식수 - 청산금(청산금 296원 × 감자비율 1/40 × 위 보유유증주식수)] × 책임제한비율 10%

마. 따라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호, 같은 법 제126 제1항에 따라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유의 사항

-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4.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판사 정선재

주식발행개요

발행주식		주식회사 씨모텍 기명식 보통주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12,000,000주
발행가		1주당 2,390원
발행금액		28,680,000,000원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2010년 9월 28일
청약기간	구주주	2011년 1월 20일 ~ 21일
	실권주 일반공모	2011년 1월 25일 ~ 26일
납입일		2011년 1월 28일
증자등기일		2011년 1월 31일
상장일		2011년 2월 11일